

	기자재선정위원회규정	규정번호	3-8-14
		제정일자	2006.01.01.
		개정일자	2020.07.01.
		개정차수	5차
		소관부서	대외협력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기자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단기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계획의 수립
2. 기자재 구입, 관리, 운용에 관한 제도 수립
3. 기자재 선정기준 수립
4. 기자재 구입 품목의 선정
5.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적정성, 활용성, 타당성 검토
6. 기타 기자재의 취득,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총장, 대외협력처장, 행정지원처장, 학술정보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 자료준비 등의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자재선정업무 담당직원과 기자재구매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의 보직명 변경은 2020년 6 월 1 일부 시행한 조직 개편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